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임준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실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이전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손실을 분담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부재함. 반면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를 가지고 있음. 해외사례 가운데 비례형의 일본식이나 절충형의 캐나다식 등이 향후 국내 손실분담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시 참고해볼 만한 방식임.

- 지난해 금융당국이 추진한 보험상품 자유화 조치로¹⁾ 인해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그 결과 경쟁력이 취약한 보험회사의 시장퇴출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보험산업 퇴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퇴출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도산처리 시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도산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모든 손실을 부담케 하는 것인데, 이는 보험소비자의 정보획득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방안임.
 - 반대로 극단적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전혀 손실분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²⁾

1)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발표를 통해 보험산업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고, 그 동안 상품개발이나 상품가격 결정 등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사전규제들을 폐지 내지 완화 하였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0. 19).

2) OECD(2013), "Policyholder Protection Schemes: Selected Considerations",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 보험계약자가 전혀 손실을 부담하지 않게 되면 건실한 보험회사를 선택할 유인이 없어져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됨.

- 따라서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되, 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일정 부분은 보험계약자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등에 담겨져 있음.

- 우선, 예보법은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되는데, 이 법에 의하면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자에게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³⁾
- 이러한 예보법의 통합적인 손실분담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보험상품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 첫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금전이 지급되는 방식에 해약환급금과 지급보험금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현행 5,000만 원 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기준에서 보면 너무 낮은 수준임.⁴⁾
 - 두 번째 문제점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도산하면 보험계약을 종료하고 환급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대신에 도산하지 않은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⁵⁾ 예보법에는 계약이전 방식과 관련된 조항이 없음.
- 한편, 금산법에는 금융당국이 계약이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손실분담을 포함한 계약이전의 구체적인 조건 변경과 관련된 조항은 없음.⁶⁾

■ 주요국의 경우 보험계약자 손실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생명보험에 국한하여 소개하고자 함.

- 손실분담제도의 유형은 아래 표에서처럼 정액형과 비례형, 그리고 절충형(정액형+비례형)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31.

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4) 주요국의 경우 지급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경우를 구분하여 한도를 설정함.

5)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기간 중간에 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되어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또는 심지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음. 왜냐하면 이전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비해 연령이 높아짐으로써 위험 또한 함께 증가하기 때문임.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우선,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 정액형 방식인데,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지급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경우를 구분하여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임.
 - 계약이전 시의 계약조건 변경과 관련해서는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개별 건별로 상황에 따라 손실분담 정도가 달라짐.⁷⁾⁸⁾
-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삭감비율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캐나다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커질수록 삭감비율이 증가함.
 - 단순한 형태를 띠는 비례형의 일본식은 규제집행비용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면, 절충형의 캐나다식은 정책수용도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표 1〉 주요국의 생명보험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

구분	유형	구체적 내용
미국(뉴욕주)	정액형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30만 달러까지,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10만 달러까지 보장
일본	비례형	이전대상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의 최소 10%를 삭감한 후 계약이전 (즉, 보험계약자의 손실분담 비율은 최소 10%)
캐나다	절충형	종신보험인 경우 사망보험금은 20만 캐나다 달러와 보험금의 85% 가운데 큰 금액을 보장, 해약환급금은 6만 캐나다 달러와 환급금의 85% 가운데 큰 금액을 보장

자료: OECD(2013), "Policyholder Protection Schemes: Selected Considerations",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31.

■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보험회사 가운데 여러 곳이 도산하였는데, 도산 보험회사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손실분담 없이 계약이전을 하였고, 그 비용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조달하였음.⁹⁾

- 만약 계약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험계약자 손실분담 방식이 사전에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IMF 당시처럼 보험계약자 손실분담 없이 부실 보험회사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음.

7) 류근옥(2010), 「보험회사 파산 시 선진국 예금보험기관의 보험금지급 사례 연구」, 『금융안정연구』, 제11권 제1호, pp. 55~97.

8) 미국의 경우 계약이전 시의 손실분담 방식은 정액형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액형이라고 볼 수 없으나, 금전 지급 시의 지급한도는 법에 구체화되어 있지만 계약이전 시의 삭감비율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정액형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음.

9) 즉, 부실 보험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다수 국민의 세금을 통해 도산비용을 조달함.

- 왜냐하면, 보험회사 도산 이후 금융당국이 부실 정도를 감안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 삭감 비율을 결정할 경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사전에 계약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손실분담 방식의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비례형의 일본식이나 절충형의 캐나다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kiri**